

# 李朝의 水田水利政策에 關한 研究

吳 泳 模\*

## 次 例

- |             |                     |
|-------------|---------------------|
| 1. 序 言      | 3. 李朝의 水利와 堤堰의 侵耕關係 |
| 2. 李朝의 務農政策 | 4. 結 語              |

## 1. 序 言

李朝時代에는 三南地方이 開發됨에 따라서 稻作技術이 많이 發達되었고 그와 關聯해서 淩 堤堰이 水田의 灌溉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役割를 하고 農產物增產을 위해서 務農水利政策이 行하여지면서 堤堰의 修築管理가 李朝의 重要한 政策으로 推進되었다.

灌溉農業地帶에 있어서는 「물」의 管理와 農業生產增大는 重要한 關係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李朝의 中央政府는 農業生產에 있어서 租稅徵收와 깊은 關聯이 있었기 때문에 土地制度의 國有化로 私的 土地所有의 發展을 排除하고 나아가서 水利施設의 獨占化規制 등으로 封建的 官僚支配를 一層 強化한 것이다. 그리고 水利事業은一般的으로 淩堤堰의 築造는 農民勞動에 基礎를 두었다. 이러한 水利政策을 中央政府가 實施하였는데도 不拘하고 官僚 또는 官家 豪族에 의한 水利施設의 冒占 侵耕이 進行되었다는 事實에 注目을 끈다. 李朝封建社會의 農民支配思想은 土地所有形態로 나타났기 때문에 水利施設의 保存 修築보다도 오히려 土地의 占奪이 그들 支配層의 目標이었다. 따라서 政府의 務農政策 또는 水利政策이 行하여 졌으나 그것이 크게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水利施設은 破壞되고 堤堰은漸次 農耕地로 轉換되어갔다.

## 2. 李朝의 務農政策

李朝封建社會의 土地所有關係는 原則的으로 國有制이었기 때문에 官人에 의한 土地支配關係가 一般化 되어갔다. 封建的 官僚의 經濟的 基礎는 地主의 土地所有에 있었다. 官僚에 의한 土地의 占有는 土地私有化過程에서 나타났었고 그 土地로부터 發生하는 租稅收入의 增大策은 重大한 關心事이었다. 李朝의 政府는 農桑을 勸하고 開墾 貯水 穀種의 供給, 適時播種 米倉의 管理 등에 務農政策의 基礎를 두었다. 李朝時代는一般的으로 經濟思想이 富國安民에 根據를 두어서 發展하였다. 여기에서 李朝의 經濟的 基礎가 되는 田制를 보여는 高麗末葉 麗朝 田制改革의 中心的 人物이었던 李成桂가 政權을 掌握한 후 麗朝의

\* 全北大學校商科大學 教授

田制改革案을 그대로 李朝의 田制로 確認 實施함으로서 李朝의 封建的 土地所有關係가 確立되었다. 李朝의 科田制는 官僚에 의한 土地支配關係가 強化되었고 王亂 以後 土地의 擴大政策은 開墾者에게 特惠를 주었고 庄田의 積極的 開發은 農地를 擴張시켰으나 그 大部分이 王室 官人 豪族의 私有化가 進行되었다. 李朝時代의 農業은 耕種農業을 中心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他產業과 比較해서 自然條件에 至大한 影響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地理的 條件은 地勢 및 土壤條件이 比較的 不利하다. 即 우리나라의 地形은 東北地方과 北部地方은 山岳地帶이고 南部地方과 西部地方은 比較的 平野와 河川을 많이 形成하고 있어서 農耕地帶는 三南地方에 集中되고 있다. 農地의 分析에 있어서도 耕地의 比率이 全國土地面積의相當한部分이 山岳과 林野로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農地의擴張과 農作物의增產은 封建社會의 田稅收入과 關係되는 問題이었다. 여기에서 政府는 農業增產 施策으로 適期播種 裁培技術의 向上 施肥 勞力動員의合理화 農產物收獲時의公正한管理 등 食糧增產을 基礎로 한 營農計劃을 概立하도록 地方에 在臨하는 監司에게 命令하였다. 特히 八道監司에게 耕種期收獲期의 勞動力確保를 위해서 地方官吏는 農民의 労力動員을一切減免하도록 命令하였고 養蠶에 있어서도 每邑에 設置된 蠶室에 奴婢使役을 制限케 하여 近邑奴婢來往之弊를 除去하도록 中央政府는 強力히 指示하였다. 麗朝 明宗時에도 務農에 關한 政府의 關心을 다음과 같이 表示되었다.

「明宗十八年制 以時勸農務修堤 貯水流澗 無令荒耗 以給民食 亦以桑田 隨節裁植 至於 漆楮栗柏梨棗果木 各當其時 裁以興制」<sup>1)</sup>

政府는 農民으로 하여금 漆 楮 栗 柏 棗 梨 등 有實樹를 裁培하라고 桑田의 管理・貯水池의 修築 등 地方守令이 徹底한 行政力を 發揮하여百姓의 生活을 向上시켜야 한다. 다음은 李朝의 歷史發展過程에서 樹立한 勡農政策은 다음과 같다.

「世祖元年 諭八道觀察使曰 大抵 農事須以時播種 若失鋤治 則經爲無用 雖欲鋤治 食下 贈則人來力役鄉體豫意 鰥寡孤獨不堪耕田者 寬徭役給口糧勿使失時 且兩麥最切於農 食諸邑要取償納 每於未刈之前 指數置薄民未擅食 甚爲無謂 鄉勿執古 隨時處且 曲盡布置副豫至意」<sup>2)</sup>

大體의으로 農事는 適期에播種을 하여야 農農을 하지 않는다. 守令 등은 農民들에게 糧食을 供給하고 稅役을 寛大히 하여 諸邑의百姓을 援助하도록 格別히 留意하여야 한다.

다시 肅宗二十四年(1698年) 頒布한 備邊司勸農節目을 보면 都事가 中心이 되어 列邑各面各里의村民에게 農業을 嘉獎하고 堤堰을 修築하여 蒙利地域에 給水量 豐足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肅宗二十四年 備邊司勸農節目 勸農一事既令 都事主管 則都事申飭列邑 使之着實舉行列邑各面各里中擇其儒品之有風力者 定爲勸農有司之任 以爲課督村民之地 修治堤堰以爲貯水蒙利之地 事前已分付 當此民間飢餓之時 雖難調發赴役 其中如有功可易 就而民所樂從者 自官家或給糧助力俾得完築 先使各邑守令巡審境內 某某處可以修治形止牒報各其面中必擇勤幹之人 定爲有司 以責其効 至於築狀之處……」<sup>3)</sup>

英祖時에도 農業은 天下之大本이기 때문에 勸農之政은百姓을 安定시키는 것을 根本으로 하고 그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種糧을 供給하고 農桑을 嘉獎하여야 한다.

「英祖四年 教曰 農者天下之大本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可不重與 惡當連歲荐飢之餘

1) 增補文獻備考 自卷 79~至卷 172 田賦考 7(影印本)

2) 上揭書 田賦考 7

3) 上揭書 田賦考 7

勸農之政 尤不宜少緩 而其先莫若勿擾民 使民安業其分 紿種耕農桑等事下 諭于八道兩都……」<sup>4)</sup>

다음 李朝에 있어서는 農產物 生產 外에도 手工業製品의 原料가 되는 桑, 楮竹 등의 裁培를 積極 嘉獎하였다. 正祖十九年(1743) 全羅監司 徐鼎修는 穀類의 主產地인 全羅道에서 主穀以外의 湖南의 特產物로서의 楮, 竹에 대해서 그의 意見을 陳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全羅道의 楮竹은 本來 土產物로 이름이 높다. 楮, 竹을 培食하는데 있어서 그 土性이 各異하여 山郡인 潭陽 等 七八邑 沿岸地인 長興 등 十餘邑이 裁培가 可能한 곳이고 그 外의 邑은 品質이 良好하지 못하다. 全羅道內에는 楮田 免稅 合하여 一結九十二負九束竹田 免稅 合하여 二百五十四結九負七束 箭竹田 免稅 合하여 一千二十九結八十五負四束 公漆田 免稅 合하여 三結十二負七束이 있는데 山郡數邑을 除外하고는 그 培養條件이 나빠서 發育이 좋지 않다. 이러한 實情을 각 守令은 充분히 認知하고 楮竹 등의 保護育成에 努力해야 한다고 力說하고 있다.

「正祖十九年 全羅監司徐鼎修 進楮竹桑養節目 本道楮竹素稻土產 公田之免稅 培養私田之隨宜 裁植科條申嚴 而挽近以來 侵害減多 勸懲屢効慢不禁 一任洞殘 撫以法意 誠極寒心 ……而道內楮田免稅 合爲一結九十二負九束 竹田免稅合爲二百五十四結九負七束 箭竹田合爲一千二十九結八十五負四束……」<sup>5)</su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農業은 古代로부터 水稻農事が 發達되었기 때문에 農業生産物의 增產을 위해서는 水利施設이 必要 不可缺한 要件이었다. 이 問題에 關해서는 丁茶山도 牧民心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川澤은 農利의 根本이 된다. 川澤의 政治를 옛날의 어진 임금이 소중히 했던 것이다. 냇물이 흘러서 고을을 지나가고 있으면 도량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서 田地에 맨다. 백성들로 더불어 公田을 경작하여 民役에 보충하는 것도 政治의 착한 것이다. 작은 것을 地沼라 하고 큰 것을 湖澤이라 하며 그 막는 것을 방축 또는 제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을 아끼려는 것이다……」

「川澤者 農利之所本 川澤之政 聖王重焉 川流逕縣 渠引水 以溉以灌 與作公田 以補民役政之善也 小田池沼 大田湖澤 其障田陂 亦謂之堤 所以節水 此澤上有水 之所以爲節也 東土名湖 僅有六八 餘皆窄小 然且葑合而不修矣 土豪貴族 壇其水利 專溉田者 嚴禁……」<sup>6)</sup>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 「물」의 管理는 政府의 巨大한 事業이었다. 自然的 地理的 惡條件으로부터 土地를 保護하고 農業生産物을 確保하기 위한 「물」의 管理는 諸集團의 共同의 事業으로 이루어졌다. 歷史發展과 더불어 漸次 農業이 發達되어 강에 따라서 물에 대한 依存度는 더욱 높아져 갔다. 이리하여 「물」의 管理者는 權威있는 官僚로서 君臨하였고 官家나 豪族 등은 水利를 獨占코자 封建社會特有의 農民에 대한 隸屬關係를 더욱 強化하였다. 다음에서 李朝의 水利政策의 第一目標인 貯水量을 위한 堤堰의 修築事業과 土豪에 의한 堤堰의 侵耕이라는 土地所有關係의 矛盾點을 考察하기로 한다.

### 3. 李朝의 水利와 堤堰의 侵耕關係

李朝社會에 있어서 人工的 灌溉와 防水는 李朝 農業의 基本的 條件이었다. 따라서 農業의 生產關係와 關聯해서 水利에 대한 灌溉는 李朝 農村社會의 根本的 特性으로 究明되어야 한다. 自然的 氣候條件에 의한 農耕生活 外에도 全國적으로 人工的 貯水池를 造成해서 防

4) 上揭書 田賦考 7

5) 上揭書 田賦考 7

6) 丁若鏞著(盧台俊譯解) 牧民心書

水와 給水를 합으로써 洪水와 旱害에 對處하였다. 이 治水事業은 王朝의 務農政策과 더불어 이 農業增產을 위한 巨大한 事業이었다. 우리나라 is 古來로부터 主食인 米穀을 生產하기 위해서 多量의 「물」이 心要한 要素이었다. 李朝의 勿農思想의 根據를 이룬 治山治水는當時의 爲政者의 重要한 政治的 課題이었다. 實로 水田에 대한 灌溉事業은 官僚에게 가장 急務이고 聖人之大務라고 하였다. 다음 글은 이러한 事情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農者 天下之本 食爲民之天 駢民稼穡 盡力溝洫 實是王政之所先 聖人之大務也 划今邦運不幸 連歲大侵 旱乾之灾 前古所罕 飢餓已極民類將書 當此之時 凡可以救 灾防患之道 講究修學 宜無所不用其極而前 頭備旱之策 惟在於廣開堤渠 專務溉灌 古人云 水田之制 由於人力 苛修人力 則地利可盡 今日急務 無出於此是自齊」<sup>7)</sup>

封建支配層의 收入의 源泉은 土地에 있었기 때문에 土地를 耕作하는 農民의 生活向上問題는 水利와 關係가 깊었다. 旱害로 因한 飢餓을 막는 길은 오직 水利事業을 擴張하는 것 이 急務이었다. 李朝社會는 大堤堰 外에도 山中 溪谷에서 流出되는 「물」을 막아서 小貯水池로 利用하는 곳이 많았다. 李朝의 農業地帶는 河川의 沿岸에서 發達되었지만 山이 많은 地帶의 물줄기에 따라 良田이 많았다. 여기에 대한 記錄을 보자.

「京畿 忠清 江原 黃海 延慶 全羅 咸吉 觀察使曰 堤壩修築之法 具載元贊六典 且今守令棄貶時 川防堤堰 并在七事之中 其立法節目 至爲詳密 然堤堰 則水源淺露 功後爲多 川防則水有源流 功山利多 故川防最好而堤堰次之 反聞諸邑 可爲川防之 處頗多而水有遺利 巡行廣問以啓」<sup>8)</sup>

全國의 으로 보면 堤堰은 水源이 淺露하기 때문에 勞力動員에 의해서 築造되는데 比해서 利用價值는 적고, 河川을 막아서 小貯水池를 築造하면 그 利用度가 높기 때문에 溪谷의 물로 灌溉하는 것이 가장 便利한 方法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李朝 農業에 있어서는 租稅의 源泉인 田地의 改良水利에 의한 蒙利區域의 擴大가 中央政府 또는 地方에 駐在하고 있는 守令 등의 重要한 事業이었다. 그리하여 百姓에 대한 備荒之策으로 堤堰을 設置하는데 必要한 勞動人口를 徵發하였고 個人이나 團體에서도 貯水池를 築造하는데 勞力과 財力이 投入되었던 것이다. 灌溉 農業地帶인 三南地方에 있어서는 政府 또는 村落共同體에 있어서 水利事業은 活潑히 進展되었으나 王家 또는 豪勢之家에 있어서는 水利施設을 破壞私占하는 事例가 許多하였다. 「물」의 管理者가 農民을 支配한다는 思想에 앞서 一次의 으로 農地를 私占하는 것이 封建社會의 支配層의 家計를 도울 길이라고 생각하여 각處의 堤堰은 破決되었다. 이리하여 水利의 機能이喪失 貯水池를 侵耕하였다. 이러한 土地私有化傾向을 防止하기 위해서 中央政府는 各邑 守令으로 하여금 境內堤堰을 일일이 親審하여 冒耕者를 捉發하여 處刑하고 田地로 轉換된 土地를 貯水池로 還元토록 命하였다. 堤堰의 占奪은 지속적으로 行되었다.

李朝의 中央政府는 이러한 堤堰이 冒耕을 法으로 禁止하기 위해서 賑恤廳堤堰事目 第二條에서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我國 自古設置堤堰 處處有之 各道各邑堤堰形止長廣尺數 皆載版籍而近年以來農政不修 法禁解弛 久遠堤堰 破決填塞 至於諸宮家 間或折受 鄉曲土豪 冒耕堤內略無顧忌 古來儲水之地 盡爲乾堤 灌溉之利 遂至廢絕 誠極痛心 今此令下之後 各邑守令 凡境內堤堰 一一親自看審 破決之處 完固改築 填塞之土 悉爲開拓 以爲及時儲水之地爲白手施 堤內之地 一依形止尺量 諸官家折受及土豪冒耕之處 盡爲還陳 此後 如有冒耕犯禁者 守令 報于監司 爲先刑

7) 備邊司謄錄 第22冊 顯宗 3年 1月 26日條(影印本)

8) 朝鮮王朝實錄 文字卷四 即位年庚午十月(影印本)

推後 轉報 本司依律全家徙邊 守令 如有不勤奉行者 論以重律 鄉所色吏 自本司提致京獄 依法科罪爲白齊」<sup>9)</sup>

우리나라는 自古로 堤堰이 設置되었으나 近來에 와서는 農政不修 法律解弛로 諸宮家 土豪에 의해서 堤堰이 破決되어 갔다. 따라서 灌溉之利가 瘦絕되기에 이르러니 實로 痛心스럽다. 앞으로 各邑守令은 境內의 堤堰을 一一이 親審하여 破決之處는 完全하게 改築하고 諸宮家 또는 土豪의 冒耕之處는 옛 그대로 還元하고 다시 그것을 侵犯하는 者는 處罰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水利에 대한 中央政府의 關心은 三國時代 高麗朝를 거쳐서 李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新羅時代에는 「新羅逸聖王下令 州郡曲農者政本食 惟民天其修堤防關田野 以安其生」<sup>10)</sup>이 라 하였다.

그리고 具體的으로 巨大한 堤堰을 列舉하여 보면 全羅道 金堤의 碧骨池는 實로 東方의 巨澤이었다.

「金堤郡 碧骨堤 自新羅已築之 實東方巨澤……」<sup>11)</sup>

全國의으로 設置된 堤堰은 湖南地方과 嶺南地方에 偏重되어 있다. 이것은 水稻作地帶로서 三南地方이 水田農業에 必要한 灌溉施設이 많았다는 것을 立證하여 준다. 李朝初葉의 水利政策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命築金堤郡碧骨堤 全羅道觀察使 朴習啓曰 城郭 所以固封守禦外侮 堤防 所以貯水澤通灌溉 實備患救旱之良策 皆不可廢……」<sup>12)</sup>

「臣近見全羅道 金堤郡碧骨堤 四方周回 二息有奇 水門有五如大川 可灌萬餘結 古人始築堤堰 以興水利 其卯甚大 甲午年修築以後 堤下廣野 登場禾穀 望之如雲 然數處連筒 不得堅實 田七十餘頃 尚未盡墾 誠可恨也……碧骨堤下陳地 幾乎六千餘結 納堤下陳地萬餘結 但以其處居民 未能盡耕 慶尚道人稠地窄 其無所耕革去寺社 奴子七八百名抄出移置…」<sup>13)</sup>

李朝의 爲政者는 以利農業 以厚民生이라는 務農政策에 따라 國土防衛에 城郭이 心要한 것과 같이 屯田 荒蕪地에 灌溉를 하기 위해서는 水利施設을 設置하여야 된다고 力說하고 大貯水池인 碧骨堤 納堤 등 境內에의 未耕地에는 慶尚道로부터 移民을 하게하여 百姓에게 安定된 業을 주어야 한다는 政策을 썼다. 이 모두가 그들의 厚民之良策을 實現한 것이다. 李朝의 堤堰은 國家의 治水事業으로 築造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기 때문에 堤堰의 築造修築은 官僚의 監督下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水利施設의 管理機構를 歷史的으로 보면 版籍司 郎官(世宗朝) 堤堰堤調 堤堰散差官(世祖時) 이 水利行政의 責任者로 登場하였고 水利事務를 專擔하는 堤堰司가 新設되었다. 壬辰倭亂 以後 顯宗代에 들어와서는 水利事業은 強化되었고 英祖年間에 이르러서는 堤堰司는 備邊司의 隸屬下에 들어왔다. 이 制度는 高宗代까지 持續되었다. 또한 顯宗三年 一月二十六日에 「賑恤廳堤堰事目」<sup>14)</sup> 制定되었고, 正祖二年 一月十三일에는 堤堰節目이 公布되었다.

위와 같이 堤堰에 대한 規約이 制定되고 水利事務를 擔當하는 官僚가 任命되었으나 中央政府 自體가 農業生產의 增進을 위해서 積極적인 政策을 實施하지 못한 채 豪勢之家에 의한 堤堰의 占奪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歷史的 事實 속에서 李朝의 水利事業의 特殊性을 찾아 볼 수 있다.

9) 備邊司賑錄 第22冊 顯宗 3年 1月 26日條(影印本)

10) 增補文獻備考 自卷 79~至卷 172 田賦考 6(影印本)

11)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十一, 三年 辛丑正月(影印本)

12) 上揭書 太宗 卷三十 十五年 乙未 八月(影印本)

13) 上揭書 太宗 卷三十五 十八年 戊戌正月(影印本)

다음은堤堰의 農耕地代가 强行된 歷史的 事例를 찾아보기로 한다.

中宗十一年(1516年) 八道觀察使에게 下達한 論旨의 内容을 보면 水田灌溉에 利益이 많다하여 堤堰設置하였는데 近來는 決毀된 貯水地를 修築하지 않고 守令 등의 監督不充分으로 侵占盜耕, 寄行되고 있다. 이터한 法을 어기는 者를 위해서 守令 등은 親審修整하는 데 힘을 써서 旱害에 對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中宗十一年論八道觀察使曰 堤堰之設 專爲水田 灌溉之益 取利甚博 而近因有司廢而不修 守令慢不致意 或侵占盜耕 或不堅築致決毀 至於植木設桶 皆不如法 一遇旱乾 常患乏水 殊非國家爲民興利之意 卽其擇定 剛明吏尺量如制 督令修整 卽赤親審啓聞 豫當遣御史使檢視 如與之案 不准非但守令 卽亦不饒」<sup>14)</sup>

仁祖元年(1623年) 備邊司의 啓에 의하면 王亂以後 많은 堤堰이 豪勢之家에 占有되어 가니 守令은 堤堰을 修築하고 或시 堤堰이 荒廢하였을 경우라도 耕作을 認定해서는 안된다.

「仁祖元年 備邊司啓各處堤堰皆是 祖宗朝相視水利 築築儲水 雖或荒廢 不容耕容 而壬辰以後 處處堤堰 多爲勢家之占……」<sup>15)</sup>

肅宗五年(1679年) 大司憲 李夏鎮은 堤堰을 士大夫들이 冒占 耕作하기 때문에 끝내 廢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肅宗五年……大司憲 李夏鎮曰 不但此也 堤堰之內 多爲士夫家冒占開墾之故 經至於廢棄矣……」<sup>16)</sup>

正祖六年(1781年)에도 政府에서는 堤堰의 侵耕을 다음과 같이 念慮하고 있다. 「官吏는 法을 두려워하지 않고 民衆은 官員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甚至於 廢堰이라 부르고 貯水地를 侵耕하고 豪富卿班은 서로 다투어 堤堰을 廣占한다. 廣大한 蒙利地域이 하루아침에 一二家の 기름진 農土로 바꾸어 진다. 이터한 事實은 國家의 紀綱이 解弛된 까닭이다.

「正祖六年……吏不農法 民不畏吏 甚至於假稱廢堰 許民耕念 豪富卿班次第廣占 將使畿千畝蒙利之地 遽作一二家膏沃之莊 此不但紀綱修傳……」<sup>17)</sup>

正祖二十三年(1798年) 堤堰堂上 李書九의 啓에 의하면 堤堰을 修築하는 것은 勸農의 要務인데 近日 守令은 이런 일에 全然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漸次 奸民의 冒耕을 가져와 급기야는 御使들의 隱結로 되어 버린다. 湖南의 西海岸 金堤 萬頓 등 數百里 平野는 옛부터 灌溉蒙利之地인데 近來 · 到處의 破塘(貯水地)이 甚히 荒廢되어 잔다.

「正祖二十二年 堤堰堂上李書九啓 堤堰修築勸農之要務 而近日守令全不致力流 來案付之處 漸入奸民之冒耕 遂作吏卿의 隱結 雖以湖南右沿言之 如金堤萬頓等數百里平野 即是自古 灌溉蒙利之地 而比年以來 到處破塘日就堰淤 少遇旱乾 輒判歉荒 實有乘於務本備豫之義」<sup>18)</sup>

李朝末葉 哲宗朝에도 中央政府의 水利事業은 豪勢之家의 堤堰의 冒耕으로相當한 支障을 招來하였다. 1852年 哲宗三年 五月에 右議政 李憲球의 啓에 의하면 各道 守令은 春初에 반드시 堤堰을 修理하여 水利에 支障이 有도록 하여야 하는데 不拘하고 近日은 牟利囂가 貯水地를 破決하여 虛偽로 廢堤라고 申告하고 各房 各衙門이 有名大地를 任意로 占奪 冒占하여 水田으로 만들고 있는 事實은 痛心한 일이다.

「哲宗三年五月 右議政李憲球啓 各道堤堰 盖爲農功專在水利 每當春初 必使補築 挽近以

14) 增補文獻備考 自卷 79~至卷 172 田賦考 6(影印本)

15) 上揭書 田賦考 6(影印本)

16) 上揭書 田賦考 6(影印本)

17) 上揭書 田賦考 6(影印本)

18) 上揭書 田賦考 6(影印本)

來吏不守法 民不重本 不復刊鑿漸成廢棄 中外牟利輩變幻形止 疑眩事實陳告於 各房各衙  
門無難毀決 容意作畜 甚至於有名 大池亦入其中 苟欲修復古法 非方伯守令何興哉 自茲以  
往 無論大小堤堰 如有破決作畜之患 一切痛禁……」<sup>19)</sup>

李朝農業에 있어서도 治山治水라는 東洋의 傳統思想에 立脚해서 水利政策을 樹立하였으나  
各處에서 發生한 堤堰의 占奪 또는 農耕地代는 從來의 封建的 土地所有形態에 變革을  
가져왔고 農民層에 의해서 展開된 穀物生產에도 커다란 打擊을 주었다.

#### 4. 結語

「務農爲治國之本 修堰爲務農之本」<sup>10)</sup>라고 肅宗五年(1679年) 許積이 말한 바와 같이 務農과 堤堰은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李朝의 水田耕作의 重要한 決定的 要因은 「물」의 管理에 있었기 때문에 李朝의 中央政府는 道臣 守令에게 農產物 增產을 위한  
措置로 堤堰의 築造 또는 春初의 修築을 命하였다 것이다. 그러나 每年 堤堰의 管理가 官員의 懈慢으로 破決 또는 廢棄되어 水稻作의 減收를 招來하였다. 그리고 李朝가 持續의 으로 關心을 表示한 公共事業으로서의 灌溉 및 防水에 必要한 堤堰은 政府의 財政의 支出  
또는 農民의 賦役으로 이루어졌으나 官家 土豪에 의한 貯水地의 破決로 堤堰은 漸次 胃耕이 擴大되어 갔다. 이러한 事實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아시아의 專制國家인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는 「물」에 의해서 百姓을 支配하기 보다는 오히려 土地를 一次的으로 占奪 私有化하고 그 農耕地에서 生產되는 農作物을 增產시키기 위해서 水制施設이 切實이 要求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물」의 管理와 土地所有矛盾은 李朝農業의 停滯의 原因이 되었다.

#### 參 考 文 獻

- 李萬運編 增補文獻備考(影印本) 中卷 自卷 79~至卷 172, 1959 東國文化社
- 徐榮輔 沈象奎 共編 萬機要覽 財用編 朝鮮總督府中樞院 1937
- 柳馨遠著 磨溪隨錄(影印本) 東國文化社 1958
- 朝鮮王朝實錄(影印本) 國史編纂委員會 1968
- 丁若鏞著 牧民心書(盧台後譯) 1975
- 備邊司謄錄(影印本) 國史編纂委員會 1959
- 李光麟著 李朝水利史研究 韓國研究院 1961

19) 上揭書 田賦考 6(影印本)